

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에서는 '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용자 지원하고 있으나,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 하였음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기 금 명 :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
 - 2) 주관기관 : 경상북도
 - 3) 조성근거 :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 - 4) 출연금액 : 금228,000천원
 - 5) 조성목표 : ('93~'17년)2,000억원 → ('27년까지)3,000억원
 - 6) 재 원 : 도, 시·군, 농·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
- ※ 출연근거 :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 7. 14, 시군 농정과장 회의)

나. 사업개요

1) 사업대상

-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인 단체, 농어업 법인, 농어업 관련기업체 또는 농·축·수협, 특수조합 등

2) 지원사업

-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
-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
-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
-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
-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
- 농수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
-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
-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
-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·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
-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
-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)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

- 지원한도액
 - 개인 : 2억원 이하(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)
 - 법인 : 5억원 이하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·수협)
 - 기타(기업투자유치 등) : 10억원 이하
- ※ 단,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, 법인 10억원 이하
- 지원형태 : 융자지원 100%

- 일반지원
 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 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- 스마트팜 조성,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
 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
 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

4) 사업추진절차

- '25. 9월 : 사업지원계획 시달(도)
- '25. 9~10월 :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(시)
- '25. 12월 :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(도)
- '26. 1~12월 :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(사업자⇒시)
- '26. 1~12월 : 사업완료확인서 발급(시)
- '26. 1~12월 : 융자실행(금융기관)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'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
- (2)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 7. 14, 시군 농정과장 회의)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

라.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

(1) 구미시 출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출연실적			출연계획		비고
'93~'24년 출연액	'25년 출연액	누계액 ('93~'25년)	'26년 출연액	예상누계액 ('93~'26년)	
6,936	228	7,164	228	7,392	

(2)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93~'24년	'25년 (8월말 기준)	'26년	조성총액 ('93~'26년)	조성목표액
재 원 별	계	276,655	8,669	7,852	293,176	3,000억원 이상 ('27년도까지)
	도	65,924	-	2,500	68,424	
	시·군	116,404	4,352	4,352	125,108	
	금융기관	24,814	965	1,000	26,779	
	이자수익	69,513	3,352	-	72,865	

(3) 연도별 지원실적(구미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'96~ '16년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	'25
농가수(호)	357	213	17	13	11	8	7	20	14	28	26
융자금액	28,294	20,404	2014	2,124	1,720	790	643	2,670	2,756	2,500	2,673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거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도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,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어업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음.
-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, 농어업인 단체·법인 및 관련 기업체 또는 농·축·수협, 특수조합 등 사업의 수혜대상이 폭넓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인해 구미시 관내 농가 및 법인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